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27호

경상남도 개방형직위(보건환경연구원장) 임용시험 재공고

경상남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개요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보건환경 연구원장	· 일반임기제 (개방형3호) ·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	1명	○ 보건환경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시행 및 조직관리 ○ 해외유입 및 토착 감염병 신속 확인 진단 ○ 먹거리·생활용품 안전성 강화 ○ 맑고 건강한 물환경 안전망 구축 ○ 환경 위해 예방을 위한 토양 및 폐수 오염도 검사 ○ 미세먼지 대응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운영 ○ 대기환경 안전망 지원 서비스 확대 ○ 국제 수준의 시험·검사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등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필수요건

-「보건환경연구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환경 분야의 연구나, 시험·검사업무 또는 보건·환경 행정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자

○ 경력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요 건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환경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환경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환경 분야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같은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 별표5의2 자격증 참조
경력 기준	▸ 공 무 원 - 보건·환경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보건·환경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 보건·환경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 책임자는 복수의 직원(정규직원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상근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임

※ 관련분야 : 보건・환경 분야

- 보건 : 감염병·미생물·식품·의약·농수산물 연구, 시험·검사, 행정업무
- 환경 : 환경·대기·먹는 물·폐수·생활환경 연구, 시험·검사, 행정업무

※ 필수요건 미달시 경력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응시자격이 없음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4. 임용 조건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보　　수

임용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개방형 3호	-	72,671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 한계액)를 근거로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 신　　분

-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5.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7분이내)포함

※ 특별요건 외국어 성적 및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등 제출 시 소정의 점수 부여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1.4.30.(금)	′21.5.10.(월) ~ 14.(금)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1.6.4.(금)	′21.6.11.(금) 또는 6.14.(월)	′21.6.18.(금)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gyeongnam.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 다운로드

○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접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 접수 권고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 주 소 :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유 효 일 :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은 배달오류, 배달지연 확인을 위해 반드시 담당자 전화 후 송부
- 추가서류 :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 → 도 수입증지 대체
  반신용 봉투(응시표 수령용, 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성명·주소 기재)
  *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시도 수입증지는 받지 않음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 수입증지(우편접수 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

> • 금　　액 : **5급(상당) 이상 10,000원** / 6·7급(상당) 7,000원 / 8급·9급(상당) 5,000원
> • 판 매 처 : NH농협은행 경남도청출장소(☎055-283-2901, 도청 본관1층)
> • 유의사항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②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불가)

③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A4 10매 내외 붙임 양식, 요약서 2매 이내 첨부) 1부

- 면접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PPT)가 있을 예정이므로 연관성 있게 준비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동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⑥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⑦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 인정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비정규직(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 등
- 발급요령 : **보험가입 전체기간에 대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용)**

-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⑨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목록 및 기타 실적 증빙서류 등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예: 졸업증명서 등)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추가 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바람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055-211-3524)로 문의바람

10.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해외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면접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24)**

○ 코로나 19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금지로 면접 응시불가

*** 단, 면접당일 단순 발열자인 경우에 한해 후순위 면접**

○ 면접시험 당일 개인 음용수 준비 및 면접시험 후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실시

***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 진 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감 염 병 의 심 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1. 3. 9. 시행)

***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